

부산지방법원 2020. 10. 30 선고 2020나4212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0. 10. 30 선고 2020나42125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. 8 선고 2019가소933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태

변론 종결2020. 9. 25.

판결 선고2020. 10. 30.

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. 8. 선고 2019가소9332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부산 북구 D에 있는 E조합 제1지점(이하 '이 사건 E조합'라고 한다)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. 피고 B는 F와 부부 사이이고, 피고 C은 두 사람의 딸이다.

나. 피고 B와 F는 2019. 2. 25. 이 사건 E조합를 방문하여, 원고로부터 예금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원고에게 총 100,000,000원을 가지고 왔다면서 현금과 수표 뭉치를 건네주었다. 원고는 계수기로 현금과 수표 액수를 세어보고 피고들 앞으로 각 50,000,000원의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.

다. 그런데 실제로 피고 B와 F가 원고에게 건네준 돈은 합계 95,000,000원¹⁾이었다. 원고는 2019. 2. 25. 당일 입·출금 정산절차 도중에서야 피고 B와 F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액수가 피고들 명의의 정기예금액보다 5,000,000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고, 이에 자신 명의 계좌에서 5,000,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E조합에 지급함으로써 부족한 돈을 채웠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E조합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고적격이 없다고

주장한다. 살피건대,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,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라고 할 것인바(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), 원고가 피고에게 5,000,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자체로서 정당한 원고적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2019. 2. 25.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E조합에 5,000,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각 2,500,000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9. 4. 3.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. 1. 18.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[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5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피고들의 각 채무는 민법 제408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, 위 각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]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,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형준

판사한혜진

판사강현준

1) 피고들은 피고 B와 F가 원고에게 건네준 돈이 100,000,000원이라고 주장하나, 갑 제1호증의

영상에 의하면, 피고 B와 F는 원고에게 50,000원 권 지폐 1,762장, 10,000원 권 지폐 490장, 100,000원 권 수표 20장으로 된 합계 95,000,000원을 건네주었고, 원고는 그 중 50,000원 권 지폐 1,500장, 100,000원 권 수표 20장을 우측 서랍 안에, 나머지 50,000원 권 지폐 262장, 10,000원 권 지폐 490장을 좌측 보조책상 위에 두었음이 명백하고, 을 제3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.